

# 유럽공동체商標法案解説

鄭 泰 連

<辨 理 士>

## ① 共同體商標의 目的과 必要性

共同體商標制度(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mark, 1980)에 관한 理事會規則(案)은 1980年 유럽委員會에 의해 發表되어 1985年 實施를 目標로 現在 調整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유럽共同體(EC) 全域에 統一된 効力을 갖는 商標制度를 制定할 필요성에 대하여 유럽委員會의 當時의 法律顧問인 슈윙츠 博士는 1974年 12月 파리에서 개최된 共同體商標創設에 관한 懇談會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共同體의 主要目的의 하나는 자유로운 商品流通과 公正한 競爭條件을 갖춘 共同의 市場을 確立하는 것이다. EC裁判所의 判決은 商標를 붙인 商品의 自由流通을 오늘날 이미 大幅으로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出處를 같이 하는 同一한 商標를 붙인 商品의 並行輸入이나 이들의 自由로운 流通을 許容한다는 것 自體는 유럽商標의 필요성에 대한 根據는 될 수 없다.

問題는 EC同盟國의 商標權許與의 前提條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商標가 共同體의 모든 同盟國에 있어서, 有效하게 保護된다는 確實한 保障은 없다. 또한 登錄可能한 標章에 대한 法律上의 規定은 여러가지이며, 특히 標章이 갖는 識別性의 問題는 각기 다른 法律上의 存續期間에 대하여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다.

이와 같이 相異한 法制上의 問題點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各同盟國의 關聯法制를 alike 改正한다는 것이 考慮되지만 이러한 改正으로는 充分치 못하다. 왜냐하면 가령 改正이 된다 하더라도 各國의 法律의 境界가 그대로 存續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同一한 그리고 類似한 商標가 각 同盟國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 取得된다는 事態가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各國의 國內法을 改正해서 새로이 各國에 共通된 法律을 創制한다는 것은 아마도 더한층 어려울 것이다. 이에 反하여 各 同盟國에 있어서 直接 効力을 미치는 새로운 法律을 만든다면 出願人이 共同體商標廳에 一回 出願하는 것으로써 모든 同盟國에 대하여 商標의 保護가 가능한, 이를테면 共同體 全域에 대한 効力만을 지니는 것으로써 賦與되거나 또는 無効化되는 共同體商標가 創制되어 共同體全域에 미치는 法的規制가 가능할 것이다.

EC裁判所는 Sirena訴訟(Ev GH/S/g 1971, 69 GRUR 1971, 279)의 判決에 있어 관련 法律上 統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實體적으로 統一된 効力을 갖는 商標權과 商標權賦與에 대한 適正한 節次規定, 當該商標權에 대한 統一의인 商標制度를 創設함으로써 商標의 取得과 그 行使에 대하여 國內市場에 대하는 것과 똑같은 條件이 共同體市場에 創設될 것이다.

이와 같은 共同體商標를 創制할 수 있다면 産業은 商標를 붙인 商品에 대하여 共同體의 規模

## □ 外國制度紹介

에 합당한 販賣政策을 세울 可能性을 갖게 된다.

이런 商標를 붙인 상품이 市場에 供給된다는 것은 商標所在의 마찬가지로 消費者에 의해서도 同一商標가 붙여진 商品은 共同體內 어디서 購入하더라도 언제나 원하는 商品과 같다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IPPI European Trademark Law)

이 基本的인 思想은 1976년에 發表된 Memorandum on the Creation of an EEC Trademark SEC(76) 2462에서 詳細히 說明하고 있다.

### 1. 共同體目的을 實現하는 商標制度

유럽經濟共同體의 目的은 共同體의 全域을 통해 調和된 經濟活動의 發展, 持續의이며 均衡 잡힌 經濟의 擴張 및 國民生活의 向上을 促進하는 데 있다(EEC 設立協定第2條).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共同體內에 있어서의 商品이나 서비스의 移動의 自由를 阻害하는 同盟國間의 障壁은 相互 이를 除去하고 따라서 同盟國은 共同體內에서의 自由競爭이 阻害되지 않도록 制度를 確立할 義務가 따른다(同協定 第3條).

消費者가 品質, 特性 그 밖의 利點들을 갖춘 多數의 商品이나 서비스를 選擇하고 生活을 豊饒롭게 하기 위해서는 商標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商標가 商品 또는 서비스에 대한 情報傳達에 가장 有效하게 作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商標가 消費者에 대하여 어떤 商品을 他人의 商品으로부터 識別해내고 同一商標가 붙여진 商品은 同一品質의 商品이라는 保證을 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國內市場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共同體市場 어디서나 同一한 作用을 하는 商標制度가 不可缺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商標保護는 各同盟國의 法律에 기초해서 許與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同盟國 모두에 있어서 同一한 商標保護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컨대 商標가 加盟國 모두에 登錄하는데 適格하다고는 保證할 수 없다. 商品 또는 서비스의 共同體內 自由流通이 活潑해짐에 따라 國內 次元에서의 商標採擇을 不利한 것으로

보는 見解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2,3個國에만 登錄出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없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그 商品 또는 서비스가 共同體內에서 自由流通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登錄안된 다른 國家에 先登錄하는 惡意의 第三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共同體全域에 統一된 効力을 갖는 共同體商標創設의 社會的 要請은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商標權者側으로서나 消費者保護側面으로서나 다같이 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商品自由流通原則과 商標制度

共同體 同盟國은 각기 固有의 商標法을 施行하고 있으나 이들 相異한 商標法의 存在가 商品 또는 서비스의 自由流通을 阻害하고 있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 商品 또는 서비스의 自由流通의 實現은 委員會의 主目的의 하나이며 이 目的은 단지 商品이나 서비스를 自由로이 流通시키는 것만으로는 實現되지 않는다. 同盟國마다에는 각각의 固有한 商標法이 있으며 여기에 기초하여 登錄된 各種의 商標가 존재한다. 이들 商標는 各國 共通으로 同一人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所有者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만약 相互 獨立된 商標所有者가 同一地域內에서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사용해서 각각의 商品 또는 서비스를 自由로이 流通시킬 수 있게 되다면 說明書라든가 그밖의 識別用라벨을 붙인다거나 특별한 容器나 포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소비자 誤認混同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混同防止等を 是認한다 할 경우 소비자는 추가된 情報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혼란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英國 商標法에 있는 “善意의 同時使用(honest concurrent user)의 法理의 導入 可能性을 검토하더라도 法體系가 다른 複數의 同盟國에 登錄된 同一商標를 생각할 경우 그대로 適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商品 또는 서비스의 自由流通原則과

그 이상의 저촉되는 國內商標의 相反되는 問題는 各國 商標가 共同體商標에 代替되었을 때에 비로소 完全히 解消될 수 있는 것이다.

### 3. 同盟國商標法の 調和

EEC設立協定 第3條(h)는 共同體市場의 適切한 機能限度까지 各同盟國의 法令을 調整해야 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EC委員會에 있어서 商品 또는 서비스의 自由流通을 위한 目的을 同協約 第100條에 따른 指令에 의해 實現되느냐 안되느냐를 檢討한 바 商標法分野에 있어서는 特許法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達成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 理由는 各國 商標法에 採用되고 있는 屬地主義原則이 견지되어 있는 限 어떤 加盟國에서 保護를 받고 있는 商標는 그 국가에 있어서만이 保護되고 規制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 國內法을 調整하는 것만으로는 法律의 獨立하고 또 經濟的으로 관련성이 없는 企業이 소유하는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간에 발생하는 問題를 해결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各 國內法을 調整하는 措置 이외에 共同體全域에 統一된 効力을 갖는 共同體商標를 創設한다는 것이 不可能하게 된다.

## ② 共同體商標規則과 國內法の 平準化 問題

共同體商標가 創設되었을 경우에도 各國同盟國의 商標法은 存續하게 된다. 共同體內에 商品 또는 서비스가 자유로이 流通된다는 것은 實現되더라도 모든 商品이나 서비스가 共同體全域에 流通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地域的인 商品이나 서비스는 將來 共同體 全域에 流通될 可能性은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 사용되는 商標의 所有者는 地域的인 保護에 滿足할 경우 國內商標登錄을 하면 足하며 그 目的을 위해서는 各同盟國은 商標法을 維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同盟國의 法律이 각기 다르며 또한 그 規定이 새로 制定되는 共同體商標와 重要한 點

에 있어서 差異가 생긴다면 共同體 商標와의 사이에 抵觸을 이르게 되며 商品 및 서비스의 自由流通精神에도 反하게 된다. 따라서 將來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商標에 관한 紛爭事件을 解決함에 있어서 各國法을 整理調整할 필요가 있으며 各國法을 調整함으로써 共同體商標의 運用에 重要한 補完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 ③ 共同體商標의 經緯

### 1. 1964年 유럽商標(案)

1973년에 EC委員會가 發表한 것이다. 이 案의 題目은 유럽商標案(Proposed European Trade Mark)로 되어 있다.

이 法案은 1960年~1964年 사이에 當時의 EC 構成國 6個國의 代表에 의해 구성된 作業團에서 作成되었으나 關係國間의 意見不一致인채 이 作業團은 解散되었기 때문에 전혀 生疎한 채의 것이다.

그러나 1973년에 비로소 이 法案이 公表된 것은 유럽特許法에 뚜렷한 進展이 있었고 그것이 契機가 되서 그리고 유럽商標法의 準備作業部會의 再開를 希望하는 프랑스政府의 建議등으로 關係國, 關係團體 등의 意見을 聽取할 目的에서였다. 이 法案은 6章 192條로 된 龐大한 것으로서 유럽共同體同盟國의 法律을 條約에 의해 調整하려는 것이다.

### 2. 1976年 覺書

1973년에 발표된 1969年案을 바탕으로 關係各國과 機關들의 意見을 集約, 調整하기 위하여 EC委員會로부터 EEC商標의 創設에 관한 覺書로서 發表된 것인데 종래의 經緯를 概觀한 위에 共同體商標制度를 創設하는 理由 및 그 主要目的 共同體 商標制度의 基本概念과 原則 그리고 共同體商標의 効力 및 節次에 대한 原則을 記述하고 있다.

### 3. 1978年 共同體商標案

1976年覺書에 의거하여 EC委員會로부터 發表된 것이다.

## □ 外國制度紹介

1964年の 유럽商標案보다는 簡略化되어 있으나 13章 144條로 되어 있다.

1976年の 覺書를 근거로해서 作成된 第1次案으로서 19個條項으로 된 1978年 同盟國의 商標에 관한 法律을 接近시키려는 理事會指示案이 나왔다.

### ④ 共同體商標(community trademark)

#### 1. 定義(第1條)

商品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商標로서 理事會規則에 定하는 條件에 符合하고 同規則에 定하는 方式에 따라 登錄된 商標를 共同體商標로 稱한다.

共同體商標는 유럽共同體 全域에 걸쳐 同一한 効力을 가진다. 따라서 讓渡, 拋棄는 共同體 全域에 걸쳐서만 할 수 있으며 商標登錄의 取消 또는 無効의 宣言도 共同體 全域에 걸쳐서 効力을 발생한다.

#### 1.1 共同體商標를 구성하는 標章(第3條)

語(words), 姓(surnames), 圖形(design), 文字(letters), 數字, 色の 結合, 商品의 形狀, 容器·包裝(packaging)의 形狀, 기타 自他商品 또는 서비스를 識別할 수 있는 標章(sign)은 共同體商標를 구성할 수가 있다.

逐條解說에 의하면 第3條는 企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形態의 標章을 例示한 것으로서 여기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音光, 香 등이 共同體商標로서 登錄되느냐의 與否는 具體的인 事案에 대하여 共同體商標廳 및 그 上級裁判所가 判斷해서 決定하게 된다.

#### 1.2 共同體證明商標(第86條)

數個의 다른 企業의 商品 또는 서비스의 品質, 製造方法 또는 이들의 共通된 特徵(例컨대 地理的 特性)을 保證하고 證明하기 위해 共同體 證明商標의 所有者가 定해진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企業의 商品 또는 서비스에 使用하는 商標는 共同體證明商標로서 登錄을 받을 수 있다.

共同體證明商標는 그 性格上 그 所有者 또는

그 所有者와 經濟的으로 關聯된 (economically associated)者의 商品 또는 서비스에는 使用이 認定되지 아니한다.

#### 1.3 共同體商標(第87條)

製造者, 生産者, 商業者 또는 서비스業者에 의해 구성되는 法人格을 가진 團體는 그 團體員의 商品 또는 서비스를 他商品 또는 서비스와 識別하기 위해 使用하는 商標를 共同體團體商標로서 登錄을 받을 수 있다.

#### 2. 共同體商標의 取得

##### 2.1 共同體商標를 소유할 수 있는 者(第4條)

共同體同盟國의 國民 및 非同盟國의 國民으로서 共同體內에 住所를 갖거나 또는 眞正한 現實的인 工業的 또는 商業的 營業所를 가진 者.

파리協約 同盟國의 國民 및 非同盟國의 國民으로서 어느 한 同盟國의 領域內에 住所 또는 現實로 眞正한 工業上 또는 商業上의 營業所를 가진 者.

共同體同盟國 및 파리協約同盟國 이외의 國家에 있어 그 國家의 法律이 自國民에 賦與하는 것과 同一한 商標保護를 加盟國의 國民에 부여하기로 한 國家의 國民.

上記한 各國民에게는 法人 및 團體 또는 組合에 있어 그것이 準據하여 設立되고 存續하는 法律이 法人으로 看做하고 있는 것(例컨대 독일의 Offene Handels gesellschaft가 포함된다)

##### 2.2 取得하는 方法(第5條)

共同體商標權은 등록에 의해 取得된다.

##### 2.3 登錄要件

###### 2.3.1 絕對的의 不登錄事由(第6條)

(a) 商品 또는 서비스의 種類, 質, 量, 用途, 價格, 地理的 出處, 生産 또는 提供時期, 또는 商品 또는 서비스의 그밖의 特徵을 表示하기 위해 去來上 必須한 標章 또는 表示(signs or indications)만으로도 된 商標는 登錄되지 아니한다.

(b) 去來에 通常的으로 사용되는 言語에 있어서 또는 善意이며 따라서 確立된 去來慣行에 있어서 慣用的으로 商品 또는 서비스를 表示하기 위해 사용되는 標章 또는 表示만으로도 된 商標는

登錄되지 아니한다.

(c) 商品自體의 性質에 由來하는 形狀, 技術的 結果로서의 形狀 또는 商品의 本質的 價値에 關係되어 있는 商品의 形狀은 商標로서 등록되지 아니한다. (註: 商品의 形狀이라도 그 形狀에 의해 自他商品을 識別할 수가 있는 것이면 그 形狀을 個人에 獨占使用시킴으로써 競爭業者, 一般消費者에 害를 주지 않는 限 共同體商標로서 登錄이 認定된다.)

(d) 商品 또는 서비스의 性質, 品質 또는 地理的 出處에 대하여 公衆을 誤認시킬 憂慮가 있는 標章 또는 表示를 포함하는 商標는 登錄되지 아니한다.

(e) 公共秩序 또는 一般이 받아 들이고 있는 道德에 違背되는 商標 및 파리協約 第6條의 3에 定하는 國家의 紋章 등을 포함하는 商標는 登錄되지 아니한다.

(f) 上記 (a)~(e)의 不登錄事由는 그것이 共同體內의 一部에만 存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適用된다. 그러나 上記 (a)의 不登錄事由는 오랜 동안의 使用結果, 어떤 特定人의 商品 또는 서비스를 他人의 商品 또는 서비스와 識別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商標에 관해서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2.3.2 相對的 不登錄事由(第7條)

(a) 出願에 關係되는 商標가 先願(優先權을 포함)의 他人의 다음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하고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 또는 서비스에 使用된 경우에 그 先願의 他人의 商標가 効力을 갖는 地域에 있어서 公衆이 混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商標는 登錄되지 아니한다.

(i) 共同體商標

(ii) 加盟國에 登錄된 商標(베네룩스登錄을 포함)

(iii) 加盟國에 있어 効力을 갖는 國際協定에 의거하여 登錄된 商標

(b) 共同體商標出願日에 있어서 同盟國의 어느 한 國家에 있어서 著名해진 他人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것으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 또는 서비스에 使用된 경우에 混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되지 아니한다.

(c) 商標의 正當한 所有者의 代理人 또는 代表者가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 그 商標를 자기의 名義로 出願한 경우, 出願人이 그 正當性을 證明하지 않는 限 그 出願은 거절된다.

## 2.4 登錄出願

### 2.4.1 出願(第23條~第25條)

共同體商標出願은 所定의 方式에 따라 作成한 願書에 所定의 手數料를 添加하여 共同體商標廳에 대하여 行한다.

出願時에 職業的 代理人을 強制하는 것은 아니나 共同體同盟國內에 住所 또는 主된 營業所를 갖지 아니하는 者는 共同體商標廳에 대하여 節次를 밟을 수 있는 職業的 代理人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出願할 수가 없다(第72條).

出願日은 手數料가 納付되는 것을 條件으로 해서 所定의 方式에 맞춘 願書가 共同體商標廳에 의해 受理된 日字이다.

### 2.4.2 優先權主張(第26條~第29條)

파리協約同盟國의 一國에 正規로 商標登錄出願한 者는 共同體商標出願을 위해 6個月의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優先權을 主張하는 날에 共同體商標의 出願이 된 것으로 看做함을 意味한다. 그러나 注意해야 할 일은 우선권일로부터 登錄期間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登錄期間은 共同體 商標廳에 願書 및 手數料가 受理된 날로부터 起算된다(第14條 및 第28條).

優先權을 主張하는 者는 優先權의 申請을 共同體商標廳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共同體商標廳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優先權證明書 및 翻譯文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 2.4.3 商品 및 서비스의 區分(第69條)

共同體가 등록되는 商品 및 서비스는 共同體 商標廳이 定하는 分類시스템에 따라 區分된다.

1978年案에 있어서는 尼斯協定에 根據하는 國際分類가 採用된다는 要旨을 定하고 있다(第84條).

그러나 이 國際分類에 따라 商品 및 서비스를 區分한다는 趣旨을 理事會規則중에 規定하는데 대해서는 技術上 異論이 있으며 上記와 같이 規定하기로 되었다.

## □ 外國制度紹介

實質上은 國際分類를 主體로해서 個個의 特殊商品에 對해서는 共同體商標廳이 獨自의 判斷으로 그 歸屬을 定한다는 融通性 있는 運用이 되도록 하였다.

### 2.5 出願審査

2.5.1 共同體商標廳에 의한 審査(第30條~第32條)

#### (i) 方式審査(第30條)

共同體商標가 出願되었을 때는 그 出願이 所定の 方式에 맞추어 있으며 所定の 手數料가 納付되었는지의 與否에 對하여 審査하다. 瑕疵가 있는 出願에 對해서는 期間을 정하여 이를 補正하도록 命命을 내린다. 이 命命에 따라 補正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出願은 拒絶된다.

#### (ii) 實體審査(第31條, 第7條, 第4項)

出願에 關係되는 商標가 第6條에 定하는 絶對的 不登錄事由에 該當하는가의 與否에 對한 審査는 있으나 第3條에 定하는 相對的 不登錄事由에 해당하느냐의 與否에 對해서는 다음에 說明하게 될 第3者에 의한 異議申請을 기다려 審査하게 된다. 出願에 關係되는 商標가 識別性을 갖지 않는 部分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 部分에 對하여 排他的權利를 立證하지 않는다는 要旨를 提出받아 登錄시킬 수 있다.

1978年案에 의하면 出願의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對한 調査를 하며 이를 찾아서 出願人에게 通知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第33條) 또 한 리스트업된 出願의 共同體商標의 所有者에 對해서는 當該出願이 있다는 것을 通知하느냐의 與否에 對해 論議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것을 義務로 해서 共同體商標廳이 履行한다는 것은 物理的 經費的 理由에서 困難하다는 意見이 강했으며 따라서 1980年案에서는 削除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 (iii) 出願補正(第32條)

共同體商標의 出願은 請求에 의해 指定商品 또는 서비스를 減縮해서 出願人의 名稱 또는 住所를 訂正하여 用語나 複寫의 誤記 기타 明白한 誤記를 訂正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訂正에 의해 商標를 실질적

으로 變更하는 것으로 되는 때는 그 訂正은 認定되지 아니한다.

#### 2.5.2 第3者에 의한 審査(第33條~第35)

##### (i) 條3者에 의한 意見提出(第33條)

共同體商標의 出願이 所定の 方式에 맞추어져 있으며 絶對的 不登錄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된 때는 公告된다.

共同體商標의 出願이 公告된 후는 등록되까지의 期間에 對해서도 自然人, 法人, 製造業者, 生産業者, 商業者 또는 消費者의 團體는 누구든지 出願에 對한 商標가 第6條에 定하는 不登錄事由에 該當한다고 생각하는 때는 그 要旨를 밝힌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

1978年案에서는 公告 후 4個月로 定하고 있었으나 登錄에 이르기까지의 期間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改正하고 있다.

이 意見書의 提出에는 手數料의 支拂은 要치 않는다. 이 意見書가 提出되었을 때 共同體商標廳은 審査해서 理由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出願을 拒絶한다. 그러나 理由 없다고 인정했을 때는 意見書提出者에게 再次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지 않고서 登錄한다.

提出에 關係되는 意見書가 理由 없다고 할 경우 그 意見書를 提出한 者는 決定에 對하여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따라서 決定에 承服하지 않을 경우는 登錄無効宣言을 申請하게 된다.

##### (ii) 異議申請(第34條, 第35條)

第7條에 定한 相對的 不登錄事由에 該當하는 商標의 所有者는 共同體商標의 公告에 對하여 公告 후 3個月이내에 異議申請할 수가 있다(이 申請期間은 1978年案에서는 4個月이었다).

異議申請은 書面으로 하며 所定の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이 手數料의 納付가 없으면 異議申請은 正規로 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異議申請人이 共同體內에 住所나 營業所도 갖지 아니한 경우 出願人의 請求에 근거하여 異議申請費用에 對해 擔保提出을 命命할 수 있다. 이 命命에 따라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는 때는 當該異議申請은 取下된 것으로 看做한다.